

##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파 주 시 장

###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2.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기존 조례 규정으로 4분기로 나눠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 발생함으로 일시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상기 내용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개정됨(2021.10.6.)

### 3. 주요내용

-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신설).
-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제3항 신설).

### 4. 자치법규안 : 별첨

##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월 3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 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 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

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우 10932)

○ 전화 : 031-940-4555 / FAX 031-940-4529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